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상위법 통폐합에 따라 상위법 명칭을 현행화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미형 일자리」 노·사·민·정 상생협약 변경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통폐합에 따른 상위법 명칭 현행화(안 제1조, 제2조)
- 담당(계) 대외직명 변경(안 제14조)
- 「구미형 일자리」 노·사·민·정 상생협약 내용변경에 따른 상생협력기금 운용방법 변경(안 제1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상위법 통폐합에 따른 명칭의 현행화와 상생협력기금의 운영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검토 결과,

- 해당 조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¹⁾으로 선정된 “구미형 일자리 사업²⁾”의 지원·촉진을 위해 2022.12.30.에 제정된 조례로써
- 상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폐합(2023. 7. 4.)됨에 따라 개정사항 및 용어 정비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적합성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19조는 “상생협력기금의 운영을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용한다”에서 “재단법인이 관리·운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1)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2)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분야 투자유치를 위해 지역 노·사·민·정의 상생협약으로 합의한 대·중소기업간 상생, 지역상생, 노사상생, 정부지원 등의 상생요소를 기반으로 고용, 투자, 복리 후생 분야의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사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의 개정(2023. 1. 19)으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기준이 강화(20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별도의 재단 설립이 어려워짐에 따라 본 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향후 관리·운영 재단법인의 선정과 기금 운영에 관하여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고자료³⁾

참고1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1】출연기관 조직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 조직설계 세부 기준, 예산 수립 기준, 조직구조·인사운영 방향성 등을 제시하여 적정 규모의 출연기관 설립 유도

▶ <조직 설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출연기관 설립 시 고려사항(붙임2)] 신설

- 조직규모: 조직 설계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도(28명 이상)와 시·군·구(20명 이상)의 운영 가능한 최소 조직 규모 제시

<출연기관 조직설계 세부 기준>

조직설계 항목		세부 기준
본부 설치 최소 기준		정원 51명 이상
복수 본부 설치 기준		정원 151명 이상
관리직 인원 비율		20% 이하
지원부서 인원 비율		20% 이하
사업부서 실무자 비율	시·도	75% 이상
	시·군·구	65% 이상
부서별 최소인원	지원부서	4명
	사업부서	6명

※ 인원(정원) 기준 : 일반정규직 + 무기계약직 + 상임임원

최소 조직규모 예외사유 : 한시조직(3년 이내 해산), 별도 법령 적용 등

- 예산수립 기준: 사업비(전체 예산의 50% 이상), 경상비(인건비의 25% 이하) 편성 비율 등 예산 수립 시 고려사항 마련

※ 예시: 총 소요예산(100%) = 사업비(50%) + 인건비(40%) + 경상비(10%)

- 조직구조: 신속한 의사결정 및 다양화·전문화된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응 유도를 위해 팀제 중심의 조직 구성 권고
- 인사운영: 설립 초기부터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도입 권고

3)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행정안전부 공기업관리과, 2023)